

#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41
제정일자	2007.11.26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2007.11.26.개정 2016.04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##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3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" 추천위원회"라 한다.)의 기능 및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- 1. 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
  - 2.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
  - ② 학교법인에 개방이사는 2배수를, 감사는 단수를 추천한다.
- 제3조(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  - 2. 부산경상대학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, 화신사이버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자 1인, 부산외국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
  - ② 제1항 제2호의 추천위원은 이 법인 및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.
  - ③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- 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5조(의장 등의 직무) ① 의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 통할한다.
  -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- **제6조(회의)**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  -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회의록)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

#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41
제정일자	2007.11.26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2

제8조(비밀유지) 추천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간사)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간사는 부산경상대학의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19.07.16.>
- ③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·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규정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추천위원회 위원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